

해외 M&A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 개선 연구

김성준* · 김우현** · 이영석***

〈요 약〉

우리나라의 경우 IT관련 기술뿐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조선 등 첨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함으로써 기술유출 시도가 다각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불법적 기술유출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공동연구, 인수합병 등 정상적 기업 활동 과정에서도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쌍용자동차와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간의 M&A(인수·합병) 시 실제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의 해외합병 등과 같이 합법적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를 다루는 법들은 다양한 법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해외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개선안 등 보완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어 : 인수합병, 산업기술, 산업보안, 산업기술유출 방지, 핵심 기술

*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정보보호트랙 박사과정 (제1저자)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정보보호트랙 석사과정 (공동저자)

*** 경북전문대학교 경찰경호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 목 차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 론 II. M&A와 기술유출 현황 III. 주요국 M&A 외국인투자 규제 IV. 해외M&A 외국인 투자 규제 개선안 V. 결 론 |
|--|

I. 서 론

우리나라는 정보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 사항으로 보고, 인프라 구축에 힘쓴 결과, 진보적인 발전과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첨단 과학 기술력의 확보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기업들은 치열한 국제경제 환경과 유례없는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경쟁기업의 경영상 주요 정보와 해외 국가의 과학기술 혹은 산업 진흥 정책 관련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이준복 2009).

기업들이 M&A를 하는 이유는 산업 환경의 변화, 국제시장의 변화, 기업전략의 변화 등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M&A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사실상 산업기술 유출이라는 부정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M&A를 행하는 대상의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 단순한 협상문제로 치부되기보다 국가의 경제안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지난 7년간 우리나라의 1년 예산 309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435조원 규모의 첨단기술이 산업스파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었거나 유출 직전 적발된 사실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산업기밀보호센터, 한국산업기술협회)

| 구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계 |
|------------|--------------|--------------|--------------|--------------|--------------|-------|-------|-------|
| 건수 | 26건 | 29건 | 31건 | 32건 | 42건 | 43건 | 41건 | 244건 |
| 피해액 (원) | 32조 9270억 | 35조 5500억 | 13조 5730억 | 91조 6500억 | 79조 8000억 | 92조 | 90조 | 약435조 |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부 산하단체에서 공식 집계한 규모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첨단기술 유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며, 지난 2009년 까지 범죄수사과에서 처리한 실적을 보면 그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짐작할 수 있다.

〈표 2〉 기술유출 사건 단속 현황 및 처리실적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연도 | 건수 | 인원 | 구속 구공판 | 불구속 구공판 | 구약식 | 기소 유예 | 공소권 없음 | 혐의 없음 |
|------|-------|-------|-----------|------------|-----|----------|-----------|----------|
| 1999 | 39 | 95 | 7 | 7 | 1 | 3 | 34 | 43 |
| 2000 | 112 | 234 | 21 | 11 | 9 | 0 | 98 | 95 |
| 2001 | 139 | 315 | 25 | 20 | 17 | 1 | 147 | 105 |
| 2002 | 151 | 389 | 44 | 29 | 17 | 2 | 157 | 140 |
| 2003 | 141 | 347 | 43 | 23 | 5 | 3 | 163 | 110 |
| 2004 | 165 | 398 | 32 | 28 | 7 | 18 | 141 | 172 |
| 2005 | 207 | 509 | 36 | 60 | 15 | 43 | 32 | 323 |
| 2006 | 237 | 628 | 33 | 71 | 37 | 34 | 29 | 424 |
| 2007 | 191 | 511 | 33 | 95 | 23 | 29 | 1 | 330 |
| 2008 | 270 | 698 | 32 | 126 | 52 | 50 | 2 | 436 |
| 2009 | 292 | 807 | 34 | 134 | 26 | 58 | 5 | 550 |
| 총합 | 1,944 | 4,931 | 340 | 604 | 209 | 241 | 809 | 2,728 |

또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검찰이 처리한 기술유출 사건은 1,944건으로 인원으로 따지면 총 4,931명에 달하는데,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대상으로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 유출사건이 가장 많으며 사건발생 빈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표 3〉 산업기술 해외유출 대상 (최근 5년간, 산업기밀보호센터)

| 구분 | 전기전자 | 정밀기계 | 정보통신 | 정밀화학 | 생명공학 | 기타 | 계 |
|----|--------------|--------------|--------------|-------------|------------|-------------|------|
| 건수 | 80건 (42%) | 37건 (20%) | 34건 (18%) | 15건 (8%) | 7건 (4%) | 16건 (8%) | 189건 |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우리나라의 쌍용자동차와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간의 M&A에서 드러난 산업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술유출 외에 기업의 M&A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기술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또한 투기성 외국인자본의 경제 질서 교란과 기술유출 목적의 적대적 M&A 등이 대두되면서 적대적 M&A에 대한 규제 필요성 및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그 이유는 외국의 적대적 M&A 대상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M&A를 단지 기업의 협상문제로 치부할 수 없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피인수 기업의 주주 및 임직원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이전 문제를 어느 정도 규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동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정상적 해외 이전에 관해서만 규율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자체를 M&A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규율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입법론적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적대적 M&A시 기술유출 방어방법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정원후 2010). 또한 국내에 제정되어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의 정상적 해외 이전에 관해서만 규율되어 있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M&A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라는 점에서도 현 법률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된다(김민배 외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발생한 산업기술유출사례들을 살펴보면, M&A에 있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률(안)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해외 M&A시 정상적인 기술이전 및 기술유출 구분 기준 연구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해외 M&A시 기술 유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주는데 의의를 가진다.

1.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외국기업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 합병 시 제기되는 기술 유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기술’이란, 국가 핵심 기술 및 전략 기술 등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는 바이다. 인수 주체가 외국기업 혹은 외국인일 경우 국부의 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수 대상기업이 국가 기간 산업에 해당되면, 일반적으로 M&A 절차에 맡겨 놓는 것이 아닌, 국가 경제 차원에서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정원후,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및 해외 외국인 투자 규제 관련 현행 법규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해외 M&A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현황들을 살펴봄으로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해외 M&A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법령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방법론, 기존 선행 연구의 주요 내용을 고찰한다.

둘째, M&A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가장 근본적인 M&A 동기 및 특성, 해외 M&A와 관련한 의의를 살펴볼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산업 기술 유출 사례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간략히 M&A 관련 현행 법제 및 외국인 투자 규제를 살펴보고, 앞에서 살펴본 산업 기술 유출 사례들에 따른 해외 M&A시 법령 개선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법제가 M&A시 기술 유출에 취약한 상태이지만,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M&A는 전통적으로 경영학에서 하나의 주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이 1990년대부터 산업보안활동을 해왔고, 2003년 이후에는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산업보안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 보호를 주제로 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관리적이고 물리적 보안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산업보안 분야 또한 새롭게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산업보

안 관련 선행 연구는 국내 기관 및 학계 그리고 해외 저널에 많이 알려져 있으며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연구과제들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산업기술 보호 관련 국내 논문으로는 중소기업청 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국가정보원에서 기술한 논문들이 많은데, 극히 제한된 내용만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학문이 틀림없다. 이처럼 산업보안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본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대표적인 산업기술 보호 관련 문헌을 짧게 소개하도록 한다.

먼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보안 필요성을 제기한 정재호(1989)의 정보사회와 산업보안이 있으며, 기업 내 보안 산업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 시큐리티 산업의 역할 및 안전의식 제공 방법 및 감사, 효과적인 기업 재산보호 방법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최선태(2005)의 기업 손실 예방론,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2003년 이후 매 년 비정기 간행물로 내놓고 있는 첨단 산업기술 보호 동향이 있다. 또한, 국내 학위 논문에서 가장 많은 참조 문헌으로 쓰이면서 산업보안의 영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산업보안활동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연구를 정리한 민병설(2002)의 산업보안체계의 정립에 관한 연구, 정태영, 장항배 (2010)의 현재 산업기술 시스템의 보안 업무 적용 방안 사안을 다룬 ‘산업기술 보호 관리 실태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산업보안’ 정의는 앞서 말한 선행 문헌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M&A 산업기술유출 관련 법 개선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라 본 논문에서 산업보안은, 국가정보대학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첨단기술 및 산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나 인원, 문서, 통신 등을 산업스파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뿐만이 아닌 특정 관계가 없는 자에게 누설 또는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 관리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도록 한다.

반면에 김민배(2007), 손승우(2008)는 산업 보안적 측면에서의 본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M&A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민배, 손승우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경영학 측면에서는 적대적 M&A 주제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보통은 적대적 M&A시 피인수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다루면서 부가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논하고 있는 형태라고 한다(손승우 200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한, 산업기술 유출형 M&A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손승우(2006)의 논문은 많은 산업기술 유출 M&A 와 관련하여 참조되는 논문이다. 이 문헌은 국부인 핵심기술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보호가 시급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미국의 입법규제 방식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유출 통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문헌은 선진국가의 규범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대 논거 및 객관적 논거를 제시한 논문이다. 그러나 정원후(2010)는 위와 같이 대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M&A 관련 김민배(2007), 손승우(2008)의 연구 논문들이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 등에 대한 외국의 적대적 M&A시 국가 규제 필요성과 그 방법에 관해서만 논하고 있을 뿐이지, M&A 자체의 본질적 특성이나 절차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유일하게 나와 있는 산업 보안적 측면에서의 M&A 관련 연구 논문은 M&A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에 제한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내포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의 정의 뿐 아니라 그 M&A 특성 그리고 개선 법령에 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II. M&A와 기술유출 현황

1. M&A 개요

1) M&A의 의의 및 동기

M&A는 합병(Mergers)과 인수(Acquisition)의 합성어로 실무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로서, 실무적 차원에서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용어이다. 혹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영전략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법률상 용어로 정원후 (2010)는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합병, 흡수합병, 신설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도(상법 제522조, 제523조, 제524조, 제459조·제530조의 2, 제41조)등이 있다.” 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 여러 기업들은 기업의 성장 및 생존 전략의 하나로 인수·합병을 활용함으로써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화를 위한 경영전략의 하나로 해외 인수·합병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창진(2009)은 M&A 동기를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규제 완화, 그리고 시장 확대,

위험 분산, 시장에 신속한 대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고속 성장, 시장 점유율, 신규 사업 및 기술 확보 등이라는 동기 요인도 있다고 말한다. 혹은 새로운 제품의 특허, 기술 등의 획득, 지리적 한계 극복을 위해 M&A의 이유를 찾기도 한다 (Stylianou, Jeffries, and Robbins 1996).

M&A를 선택을 하는 동기로는 전략적, 경제적, 재무적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Larssons and Finkelstein(1999)에 의하면, 전략경영 범주의 연구는 M&A를 사업 다각화의 수단으로 보고, 서로 다른 형태의 기업 조합에 대한 동기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말한다. 또한 경제적 범주에서의 연구는 규모의 경제 및 시장 지배력 확대를 M&A의 주된 이유로 강조하고, M&A 성과를 대부분 회계기반 도구들을 이용하여 측정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재무적 범주에서는 주식시장에 기반을 두고 측정을 하며, 조직이론 범주에서는 통합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어 문화적 차이나 충돌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는 이론이다. 그 외에도 직원들의 심리적 문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 경쟁자 제거 등이 있다(이창진 2009).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동기로 기업의 성장과 위험 전략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전략 경영 범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산업 기밀을 획득할 수 있는 유형들이 내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M&A 유형, 특성의 파악을 통하여 국제 기업과의 M&A시 발생하는 특성들을 살펴 보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M&A의 유형 및 특성

일부 기업들은 통합 대상 기업들의 동등한 정도를 기준으로, 합병(Mergers)과 인수(Acquisition)로 나눈다. 즉 회사의 크기나 파워가 비슷할 경우를 합병(Mergers)에 해당하고,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 인수(Acquisi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Wijnhoven et al. 2006). 혹은 합병(Mergers)은 두 개의 회사를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회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수(Acquisition)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사들여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규정하기도 한다 (Schuler and Jackson 2001). 합병이란 것은 대등 합병(equal merger)과 비 대등 합병 (unequal merger)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인수의 경우 인수 후 통합, 인수 후 분리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인수(Acquisition)와 합병(Merger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합병(Mergers)은 두 개 이상의 회사들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의 회

사로 통합되는 구조이고, 인수(Acquisition)는 어느 한 회사가 우월한 입장에서 다른 회사에 대해 통제권을 획득한 상태로 통합하는 구조라는 정의이다(이창진 2009).

경영권 방어를 통한 산업기술 보호를 명목 하에, 근래 우리나라는 전략적 투자 및 재무적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영참여를 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 투자와 달리 전략적 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투자로 인해 최근 발생한 (주)STX와 (주)하이닉스 반도체 사례처럼 산업 기술 유출 가능성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전략적 투자라는 것은 기업 인수·합병 시 재무 이익만을 노리는 재무투자자와 달리,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를 말하는데,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가 참여할 경우 영업 측면을 더욱 유리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략적 투자 외에도 투기성 외국인자본과 기술유출 목적의 적대적 M&A 등이 대두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 대상으로 M&A 시도도 일어나고 있어, 전략적 투자 외에 적대적 M&A 또한 경영진의 M&A 방어권 문제로서 산업기술 유출 및 그에 따른 보호와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정원후 2010).

이러한 인수·합병의 형태 및 전략적 투자를 통해 우리는 통합 후의 산업 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손실 및 인재 유출 등의 문제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에 따라 통합대상 회사 직원들의 태도 및 스트레스 강도, 갈등의 정도 등에 영향이 있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 측면에서 볼 경우, 인원 감축, 조직 통폐합 같은 것들이 수반되면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게 되고 매우 경쟁 지향적이 된다는 것이다. 즉 기업들은 M&A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지만 사실 실패 요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본래 협업을 통한 성공과 효과를 위해 M&A를 실시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는 불안감을 작용하고, 그 안에서 보안의 인식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산업기밀유출, 나아가 국부 손실을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즉 성과가 좋지 못할 경우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며, 업무 혼란 및 충돌, 고객들의 만족도 저하 등의 생각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M&A 관련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Schuler and Jackson(2001)은 M&A의 실패 원인으로 문화적 차이 및 업무의 비호환성 그리고 유능한 인재의 이직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M&A의 성공을 위해 우리는 전반적인 기업의 협업 및 인

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이창진 2009).

3) 해외 M&A 시 특성

중국의 해외 M&A 거래규모는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M&A를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으로 2% 미만이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 M&A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일본을 앞지르고 있으며 더욱 투자가 거세지고 있다. 실지로 이러한 해외 직접투자는 선진 기술 확보 및 트렌드와 마케팅 등과 같은 무형자산 중시, 그리고 다국적 기업과 제휴를 통한 경쟁력 강화, 공급과잉 문제 극복과 같은 전략에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중국은 해외 M&A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술을 유지한다는 방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넓게 중국을 보듯이, 과거 해외 M&A는 기업 설립형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더욱 진보하여 국가발전의 일환으로 M&A활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근래 해외를 중심으로 하는 M&A는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 협조하여 이를 장려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차경자 2008).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BOE 그룹의 (주)하이닉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사례¹⁾나 (주)상하이 자동차의 (주)쌍용자동차 인수사례²⁾를 볼 수 있듯이 선진기술확보 수단으로 해외 M&A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기업의 해외 M&A의 성과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경영실적을 악화시키거나 선진기술의 무단 유출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경영관리 인재의 확보 및 육성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M&A 성공 확률을 매우 작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백권호 외 2009).

이러한 중국 및 다국적 기업과의 해외 M&A는 단지 사업의 실패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직접 관리

1) 2008년 8월 검찰은 중국의 BOE-Opto Electronics Technology에 핵심기술을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BOE-HYDIS Technology 주식회사의 최모 대표와 임모진 개발 센터장을 불구속 기소하였다(문화일보, 2008.8.28. "M&A 통한 기술유출 산업스파이 첫 기소" 기사 참조).

2) 2008년 11월 10일 쌍용자동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와 같은 연구소 수석연구원 김모씨, 책임연구원 박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고, 상하이자동차를 대표해 기술유출을 지시한 연구소의 중국인 부소장 장모씨를 기소중지 하였다(한국일보, 2009.11.11자 "기업, 문지마 해외매각 '먹튀 경중' 다시 울렸다" 기사 참조).

해야 하는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사회·경제 기반 산업을 외국자본이 인수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FINSA(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를 제정하였고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은 미국의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라는 ‘외국투자심의위원회’ 절차를 도입하기도 하고 있다.

다음은 국제기업과의 M&A 중, 국내의 중요 해외 M&A 산업기술 유출 사건 관련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지켜지고 있는 국제 조약 및 필요 법률의 주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의 중요 해외 M&A시 산업기술 유출 사건

선행 논문 및 아래 주요 사건 사례들을 통해, 인수·합병 특성 상 이미 보안의 문제점이 내재되어있으며, 산업기술 유출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기술유출을 시도하는 사건 또한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또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기술 유출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합병으로 인한 기술 유출사건들 또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바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주)쌍용자동차 기술유출 사건과 (주)BOE 하이디스 기술 유출 사건 및 앞에서 언급한 전략적 투자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주)하이닉스 반도체와 (주)STX 사건 사례의 사건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쌍용자동차 기술유출 사건

2009월 11월 경에 일어난 우리나라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로부터 지분 49%가 인수된 (주)쌍용자동차는 국가지원 연구개발비가 56억원이나 투입된 하이브리드 통제장치 소스코드 및 디젤엔진 변속기 기술 등을 무단 유출하였다. 그러나 기술유출을 지시한 중국인은 기소중지 처분만 받았을 뿐 그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은 매우 낮았으며, 기술유출 논란 및 도용으로 인해 (주)쌍용자동차의 기업 가치가 감소된 사건이다. 쌍용자동차 노조와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2007년 8월 11일 kDDYD 자동차 대표이사 장쯔웨이와 이사진들을 혈값 기술이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또한 국정원은 2007년 1월하이브리드자동차 중앙 통제장치 소스코드 기술유출에 대한 첩보를 검찰에 이첩하였으며, 검찰은 2008년 11월 10일 쌍용자동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와 같은 연구소 직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상하이자동차 대표하여 기술유출을 지시한 연구소의 중국인 부조장은 기소 중지되었다(YTN 보도자료 2009.11.11).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³⁾ 해당 기업의 M&A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기술유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M&A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규제는 사전적규제 형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2) (주)BOE 하이디스 기술유출 사건

2003년 중국의 BOE 그룹이 (주)하이닉스 반도체 자회사인 하이디스를 인수·합병하였다. 그러나 2006년 유동성 위기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핵심기술을 반출한 기술 유출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다. 인수·합병 당시, 하이디스 소유 TFT-LCD 기술 중 5세대 공장에서 양산되던 제품기술에 한하여 BOE 그룹 계열 전자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로열티를 지급받아 기술을 이전하였고 그 이전받은 전자회사는 누설을 못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고 개발 서버를 구축하여 하이디스 기술을 무단 사용 하였으며, 핵심기술 200건을 포함한 4,331개의 기술이 유출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인수·합병된 BOE 하이디스에 손해를 가한 사건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본 사건은 미국과 달리 M&A를 통한 기술유출에 대한 관련 법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M&A 후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기업 경영자의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

3)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 제1항 참조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판례⁴⁾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정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주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해당 사건은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M&A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하여 법원은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처벌강화를 더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주)하이닉스 반도체 vs 대만의 프로모스 라이선스 사례

이 사건은 2008년 초 (주)삼성전자와 (주)하이닉스가 (주)하이닉스와 대만의 프로모스와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두고 논란이 된 사건이다. 전략적 제휴의 조건은 (주)하이닉스가 대만의 프로모스에 D램 공정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주)하이닉스는 그 대가로 생산량 절반에 대한 처분권과 나머지 판매분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경쟁국가인 대만 업계에 54나노급 D램 생산기술을 이전하는 것 자체가 핵심기술을 유출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2008년 5월 29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주)하이닉스의 공정기술 이전 안전에 대해 ‘국가안보상 심각한 우려가 없다’는 결과와 함께 (주)하이닉스와 (주)삼성전자의 갈등이 일단락되었다(이이텔리 종합 뉴스 2008.03.07).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목적은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이닉스의 프로모스에 대한 기술이전은 이러한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기술이전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조건으로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간단하게 판명할 수 있지만, 대외무역법상 규정하고 있는 전략기술의 경우,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자가판정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무부처가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명하는 절차를 시스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3) (주)하이닉스 반도체 vs (주)STX 사례

지난 2011년 7월경 (주)STX는 사업의 다각화 차원에서 (주)하이닉스 반도체 인수·합병을 시도한다. 즉 조선·해운에 90%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함이었는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동 국부펀드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다. 시장의 반응은 중동 국부펀드가 재무적 파트너로만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인수가 이뤄지면 하이닉스의 선진 기술 및 유통망, 경영기법 등에 대한 고급 정보를 접하는 등 기술 유출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일각에서는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기술 유출, 산업위축, 고용감소, 사회·경제적 비용증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결국 (주)STX의 (주)하이닉스 반도체의 인수·합병은 무산되었고 (주)SK가 인수하기에 이르면서 사건은 종결 되었다(AM7 종합뉴스, 2011.07.13). 본 사건에서는 인수합병은 무산되었지만 향후 이러한 사례처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유출 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

3. 현행법령의 문제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격한 기술수준의 향상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유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이 해외 기업과의 M&A, 라이선스, 국제공동연구 등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 또한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해외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통하여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획득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사전 통제할 법률적 장치가 충분치 않았지만, 이를 위해 2011년 7월 25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개정이 되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해외 자본이 M&A를 통해 국내기업의 국가핵심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사전 통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해외 인수·합병을,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령에는 이를 구체화 하는 기준 개정안이 나오지 않은 실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의 M&A 관련 산업기술유

출방지법 시행령 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Ⅲ. 주요국의 M&A 관련 외국인투자 규제

1. 미국의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외국인 투자 규제

미국은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하여 민사적구제와 형사적 구제의 2원적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민사적 구제에 관하여는 주차원에서 1976년 ‘통일영업비밀보호법 (Uniform Trade Secret Act)⁵⁾을 근간으로 각 주에서 제정한 주 영업비밀보호법에서, 형사적 구제에 관하여는 연방차원에서 1996년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이하 EEA라 함)’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2007년 기존의 Exon-Florio Amendment⁶⁾을 수정하여 외국인투자 심사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FINSA(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를 통과시켰다. 미국이 개정한 이유는 외국자본에 의한 M&A 자체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의 유출을 막고자 함에 있었다⁷⁾. 따라서 미국은 외국기업이 자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술유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되면 경영권 인수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FINSA는 기존의 Exon-Florio Amendment와 비교하여 크게 3가지 요소에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행정명령이나 시행규칙 등 관행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심사절차를 법률상조문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국가안보에 대한 의미가 확대되었다. 셋째, 행정부의 의지에 대한 보고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의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즉, FINSA 법률은 해외 투자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제한하지 않고, 국가 안보 보장을 목표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기간산업이 외국인 자본에 의해 인수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며, 기존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개혁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5) 동법은 1985년 개정되었으며, 45개주에서 채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en.wikipedia.org/wiki/Uniform_Trade_Secret_Act\(2011.10.19. 최종방문\)](http://en.wikipedia.org/wiki/Uniform_Trade_Secret_Act(2011.10.19. 최종방문)) 참조.

6) 이 조항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미국기업 인수로 인해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규제 장치로 국가안보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7) 1986년 일본 Fujitsu사에 의한 미국 반도체회사인수 사건을 계기로 미국사회에 ‘경제안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것이 법안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FINSA는 기존 산업기술 유출 관련 통제 관행을 법적으로 체계화 한 것이며, 외국정부기관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에 의한 주요한 사회경제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자국기업이 인수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광범위한 심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과 FINSA의 제정은 기존에 통제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정의되었던 Exon-Florio Act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조사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보다 강력히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1975년에 설치되었으며 외국인의 직접투자 및 인수·합병을 심사해 온 CFIUS⁸⁾는 2003년부터 심사범위에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사안을 포함시킴으로써 심사범위의 실질적 확대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FINSA역시 이러한 실무적 변화를 반영하였는데, 우선 Exon-Florio Act 법상의 CFIUS의 심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그 조사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 ‘국가안보’의 정의를 구체화 시켜 중요한 사회·경제기반시설과 국가핵심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⁹⁾

이 법안에서는 ‘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기설비와 전송설비, 가스저장소와 그 전송설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해외투자기관의 범위를 외국정부 뿐만 아니라 당해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투자 주체에 대한 심사범위를 확대시켰다.¹⁰⁾

또한 FINSA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고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CFIUS에 부여하고 있다. FINSA는 대상거래의 결과 발생하는 안전보장에 관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CFIUS나 주도기관은 외국의 인수기업과 협정을 체결하거나 조건을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경감협정(Mitigation Agreement)이라 하는데 이는 대상거래가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위험분석에 근거해야 한다.¹¹⁾ 즉, CFIUS의 심사를 통과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이 고의적이고 실질적으로 경감약정을 위반하거나 그 위반을 해결할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세이프하버 조항의 적용을 배제시키도록 한 조치인 것이다. 무엇보다 FINSA는 Exon-Florio 법안과 마찬가지로 CFIUS 소속기관의 조사요청과 거래 인수자의 자발적 신고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요한 사회

8) FINSA에 따라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구였던 CFIUS는 법률적 기구로 전환되었다.

9) FINSA § 3.

10) 50 U.S.C.A. App. § 2170(f).

11) 50 U.S.C. App. § 2170(l)(1).

경제기반까지 확대시킴으로써 해외 인수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확대시키고 있다¹²⁾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FINSA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완전히 차단시키지는 않고, 다만 심사를 통해 전체 혹은 일부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손승우 2009).

2. 일본, EU 등 OECD 회원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논의는 주로 OECD를 중심으로 전개된 바, 일본, 호주 등과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은 국가안보 혹은 경제 질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인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적절히 규제를 하고 있다. OECD 규약¹³⁾은 제1조에서 각 회원국은 점진적으로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여야 하고, 추가로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규정보다 엄격하게 바꾸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제정 및 규약 제3조의 ‘본질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규약 전체에 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직접투자를 규율하고 있으며 구조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심사제와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 정부 당국에 부여하였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손상시키거나 공공질서 유지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안전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투자가 사업목적, 금액, 투자실행 시기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¹⁵⁾ 프랑스의 경우는 화폐재정법에서 공공질서 혹은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11가지 전략산업분야에서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획득하거나 1/3이상 지분을 획득하는 경우 사전승인 받도록 하고 있으며 승인없는 투자에 대해 사후적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⁶⁾ 또한 호주와 캐나다 역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사전심사를 하고 있으며, 먼저 호주의 경우 외국인 인수 및 합병을 통해 5천만달러 이상의

12) FINSA § 2(b)(1)(c).

13) OECD규약은 1961년에 처음 체결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종 2009년 개정되었다.

14) OECD 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2009 at Article 1.e.

15)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16) The code de monetaire et Financier § 151-2, § 151-3.

자산을 보유한 부동산 혹은 기업을 인수하거나 1천만달러 이상의 신규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사전심사를 하고 있다. 캐나다는 500만달러 이상의 캐나다 기업을 직접 인수하거나 5000만달러 이상의 캐나다 기업을 간접 인수하는 경우에 그 투자에 따른 이득이 캐나다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사전 심사한다고 한다(손승우 2009).

IV. 해외M&A 관련 외국인투자 규제 개선안

외국인투자에 의한 M&A의 경우 기존 기업에 대한 M&A에 의한 방법이 아닌 신규투자를 통한 단독법인의 설립 또는 합작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고용창출, 기술이전, 경쟁촉진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투자 형태는 고용창출이나 기술이전보다는 경쟁의 관점에서 단기적인 고수익을 겨냥한 금융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주류로 이루고 있다(최승재, 2006). 따라서 외국인투자 중 전략적 투자와 재무적 투자를 나누어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후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로 남겨두고¹⁷⁾, 전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2011년 7월 25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개정되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지만 아직 이를 기반한 시행령 개정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M&A 외국인 투자 규제에 관한 시행령 개선안(해외M&A의 국인 투자 규제에 대하여 신설안으로 제18조의2와 제18조의3, 제18조의4)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외국인의 인수합병 및 합작투자의 범위(제18조의2) 신설

〈신 설〉

제18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해외인수·인수합병등) 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등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이 법 제1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상기관(이하 본조에서는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187조 참조.

먼저 “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등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이 법 제1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상기관(이하 본조에서는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행령에서 신설안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해외인수·합병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국내기업 또는 법인」이라 표현하는 경우 연구소, 조합, 단체 등은 포섭되지 아니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 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이라는 표현보다는 「법 제1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상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신 설〉

1. 외국인이 단독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특수관계인은 외국인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와 합하여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 하는 경우(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려 하는 경우라도 대상기관의 주식 등의 최대소유자가 되면서 대상기관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때를 포함한다).
 - 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나. 외국인이 단독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대표자를 임명할 수 있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 외국인이 대상기관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입차하려 하거나 경영을 위임받아 이를 경영하려 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는 「소유한 때」부터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규제하겠다는 것이므로, 「소유하려 하는 경우」라고 표현하는 것이 진행형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더욱 좋은 표현으로 사료된다. 「특수관계인」도 외국인일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지 정하여야 하는바, 특수관계인은 내국인이라도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취지상 이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작성한다. 「지배적 영향력」이라는 용어는 「지배적 영향력」의 판단을 법원의 해석에 맡긴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가”항목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친족의 범위와 일치하므로 표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 그대로 준용을 하였다. 다만, 실무상으로 호적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제2호에 대해서는 제1호와 마찬가지로 법 제11조의2는 「소유한 때」부터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규제하겠다는 것이므로, 「양수·임차하려 하거나」와 「경영하려 하는 경우」라는 조항으로 신설안을 제안해 본다.

Ⅱ 개정 법률안의 근거 조문 Ⅱ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자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대상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인 범위(제18조의3) 신설

〈신 설〉

제18조의3(외국인의 범위) 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2.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이 조문은 법률 제11조의2의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외국의 법인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나아가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 국제경제협력기구를 포함한다. 이 신설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같은 것으로서 준용하여도 무난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안을 시행령에 추가로 신설하였다.

|| 개정 법률의 근거조문 ||

제11조2의(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

-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의해 해외인수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제18조의4) 신설

〈신 설〉

제18조의4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해외인수인수합병 등을 신고하려는 대상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인수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 대상기관에 대해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매출액·자산총액·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 해당 해외인수합병 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 ②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8조의4 【해외인수합병 등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대상 해외인수합병 등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에 대해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매출액·자산총액·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2. 해당 해외인수합병 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3. 해당 해외인수합병 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 ②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항은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대상 해외인수·합병등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에 관한 사전검토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

호상의 자료는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상대 외국인이 외국 정부 등과 관련 있는지 여부, 합병의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제3호부터 제5호상의 자료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이다.

V. 결 론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IT분야에서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업의 주요한 비밀 정보자료 유출 행위가 지속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M&A와 같은 합법적 방법에 의한 기술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산업기술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데, 경제스파이에 의한 불법적 기술유출 뿐만 아니라 주요한 국가기간 산업 및 핵심적 기술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M&A에 의한 기술유출 문제에서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나 승인 등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제정해 대응하고 있다. 기술유출에 대해 일반적인 민·형사적 대응 이외에 특정한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단위에서 직접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는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보호 관리 및 해외매각·이전 등의 경우 정부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신고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최근 외국 기업들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직접 수입 또는 이전받는 대신 해당 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함께 합작투자를 실시하여 국가핵심기술을 간접적으로 이전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에 M&A 외국인투자 관련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위임받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기업의

인수·합병 등 합법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재 상황으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국부유출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 투자에 의한 국부의 유출이나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과 통제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한기준 및 절차없이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인해 국민경제활동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는 것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2007. 6.)
- 김민배 (200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M&A 관련 입법 동향. 법학연구 제10집 제2호, 3-16.
- 김민배, 김경준 (200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쟁점. 산업재산권 제23호, 1-36.
- 백권호, 조정일, 우진훈 (2009). 중국기업의 해외 M&A 현황과 평가. 현대중국연구, 45, 291-335.
- 손승우 (2009). 산업기술 유출형 M&A에 대한 규제방안. 법학연구, 31, 267-297.
- 송호신 (2009). 상법상 기업매수에 대한 M&A법제. 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141-189.
- 유진희 (2005). 유럽연합의 기업인수 규제 -공개매수지침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19권 제3호, 259-287.
- 양영준 (20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고, 산업보안연구논총.
- 이창진 (2009). 인수·합병에 따른 IT 통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인식과 태도의 상관관계 연구 -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운제 (2007). 미국 경제스파이법 연구. 법제 통권 제589호, 142-169.
- 이준복 (2009). 산업기술유출방지 관련법의 동향과 개선방안. Issues & Policy 2009.
- 전재완 (2007).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법과 인수합병에 관한 연구. 경영학적 관점에 서-. 법학연구 제10집 제2호, 135-155.
- 정태황, 장항배 (2010). 산업기술 보호 관리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 학회지 24, 147-170.
- 정 대 (2006). 적대적 M&A에 대한 대상회사의 방어행위의 적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20권 제2호, 181-257.
- 정병일 (2007). 산업기술의 해외유출과 기술이전에 관한 소고-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제21호, 8-35.
- 정원후 (2010). M&A시 산업기수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적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근 (2010). 산업기밀 유출범죄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산업보안연

구논총 제6호, 281-302.

지식경제부 (2011). M&A 등 해외 인수합병시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개선 연구 제안 요청서.

차경자 (2008). 중국기업의 해외 M&A현황과 시집. 무역학회지. 22, 335-356.

2. 국외문헌

Larsson, R. and S. Finklestein. (1999). Integrating Strategic, Organizational, and Human Resource Perspectives on Mergers and Acquisitions: A Case Survey of Synergy Realization. *Organization Science*, 10(1): 1-26.

Schuler, R. and S. Jackson. (2001). HR Issues and Activities in Mergers and Acquisitions. *European Management Journal*, 19(3): 239-253

Stylianou, A. C., C. J. Jeffries and S. S. Robbins. (1996). Corporate Mergers and the Problems of IS Integration. *Information & Management*, 31(4): 203-213.

Wijnhoven, F., T. Spil, R. Stegwee and R. T. A. Fa. (2006). Post-Merger IT Integration Strategies: An IT Alignment Perspective.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15(1): 5-28.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law for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
Focusing on international M&A**

Kim, Seong-Jun
Kim, Woo-Hyun
Yi, Yeong-Seok

Achieving high-level technology in fields such as IT-related industry, semiconductors, mobile phones, LCD, automobile, shipbuilding, etc., Korea has become an international market leader in those fields. In results, there are the increasing numbers of technology leakage attempts in various manners. Recently, technology leakages are not limited to illegal industrial espionage, but also occur during usual corporate proceedings such as technology transfer, joint research and M&A. In fact, there was a technology leakage issue in the M&A between Ssangyong Motors of Korea and Shanghai Motors of China. Current M&A regulations of Korea are not independent laws, but are spread over various laws, such as commercial law, Capital Markets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Foreign Trade Act, etc.

This paper focuses on whether the current Korean regulations regarding M&A are able to effectively restrict the leakage of major information of corporate during M&A and seeks the complements.

**Key Words : M&A, Industrial technology, Industrial security,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Core technology**